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693호

2026. 10. 16.(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

○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정기)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동구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동구소식 → 고시/공고 → 동구공보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03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593명 → 605명 (증 12명) (안 제2조)

1) 집행기관의 정원: 574명 → 586명 (증 12명)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 3)

1) 총 계: 593명 → 605명 (증 12명)

2) 일 반 직: 591명 → 603명 (증 12명)

○ 5급: 41명 → 40명 (△ 1명)

○ 6급 이하: 543명 → 556명 (증 13명)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4. 근거법규: 【붙임2】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제30조(정원의 규정)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3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기획예산실

2) 팩스번호: 052) 209-3029

3) 전자우편(E-mail): ddiddiya0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기획예산실(전화 (052)209-30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3명”을 “6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74명”을 “58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 관 별 직 급 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605	-			
정 무 직 계	1	-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603	-			
3급	1	1			
4급	6	5		1	
5급	40	25	2	4	9
6급 이하 계	556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동구 (이하 “구” 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74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 605명-----. 1. ----- 586명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 계</th><th>본 청</th><th>의회사무과</th><th>작송기관</th><th>동</th></tr><tr><td>총 계</td><td>593</td><td colspan="4">-</td></tr><tr><td>정무직계</td><td>1</td><td colspan="4">-</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591</td><td colspan="4"></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r><tr><td>4급</td><td>6</td><td>5</td><td></td><td>1</td><td></td></tr><tr><td>5급</td><td>41</td><td>25</td><td>2</td><td>5</td><td>9</td></tr><tr><td>6급 이하계</td><td>543</td><td colspan="4">-</td></tr><tr><td>별정직계</td><td>1</td><td colspan="4">-</td></tr><tr><td>6급 상향이하계</td><td>1</td><td colspan="4">-</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작송기관	동	총 계	593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계	591					3급	1	1				4급	6	5		1		5급	41	25	2	5	9	6급 이하계	543	-				별정직계	1	-				6급 상향이하계	1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table><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 계</th><th>본 청</th><th>의회사무과</th><th>작송기관</th><th>동</th></tr><tr><td>총 계</td><td>605</td><td colspan="4">-</td></tr><tr><td>정무직계</td><td>1</td><td colspan="4">-</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603</td><td colspan="4"></td></tr><tr><td>3급</td><td>1</td><td>1</td><td></td><td></td><td></td></tr><tr><td>4급</td><td>6</td><td>5</td><td></td><td>1</td><td></td></tr><tr><td>5급</td><td>40</td><td>25</td><td>2</td><td>4</td><td>9</td></tr><tr><td>6급 이하계</td><td>556</td><td colspan="4">-</td></tr><tr><td>별정직계</td><td>1</td><td colspan="4">-</td></tr><tr><td>6급 상향이하계</td><td>1</td><td colspan="4">-</td></tr></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작송기관	동	총 계	605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계	603					3급	1	1				4급	6	5		1		5급	40	25	2	4	9	6급 이하계	556	-				별정직계	1	-				6급 상향이하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작송기관	동																																																																																																																																
총 계	593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계	591																																																																																																																																				
3급	1	1																																																																																																																																			
4급	6	5		1																																																																																																																																	
5급	41	25	2	5	9																																																																																																																																
6급 이하계	543	-																																																																																																																																			
별정직계	1	-																																																																																																																																			
6급 상향이하계	1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작송기관	동																																																																																																																																
총 계	605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계	603																																																																																																																																				
3급	1	1																																																																																																																																			
4급	6	5		1																																																																																																																																	
5급	40	25	2	4	9																																																																																																																																
6급 이하계	556	-																																																																																																																																			
별정직계	1	-																																																																																																																																			
6급 상향이하계	1	-																																																																																																																																			

【붙임 2】

근 거 법 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

II.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 직급의 인건비 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5급(연봉제) / 6급(16호봉) / 7급(11호봉) / 8급(6호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마급) / 공무원직

III.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재정 지출	합계	2,869,365	540,458	556,671	573,373	590,573	608,290
	5급임기제(△1명)	△441,672	△83,191	△85,687	△88,257	△90,905	△93,632
	6급(증3명)	1,385,000	260,871	268,697	276,758	285,061	293,613
	7급(증2명)	742,462	139,846	144,041	148,363	152,814	157,398
	8급(증8명)	2,285,774	430,536	443,452	456,756	470,458	484,572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2명)	△532,432	△100,286	△103,295	△106,393	△109,585	△112,873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명)	△261,072	△49,174	△50,649	△52,169	△53,734	△55,346
	공무원직(△1명)	△308,695	△58,144	△59,888	△61,685	△63,536	△65,442

※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3년(2024~2026) 지방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3%) 반영

IV. 재정지출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2,869,365	540,458	556,671	573,373	590,573	608,290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2,869,365	540,458	556,671	573,373	590,573	608,290
기금		-	-	-	-	-	-
기타		-	-	-	-	-	-

V. 기타사항

- 작성자: 기획예산실 지방행정주사 변 정 임(052-209-3032)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구분							
합계		2,869,365	540,458	556,671	573,373	590,573	608,290
국비	국고보조금	-	-	-	-	-	-
구비	일반회계	2,869,365	540,458	556,671	573,373	590,573	608,29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 확보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변 정 임
- 연 락 처: 052)209-3032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04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 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593명 → 605명 (증 12명)

1) 일반직: 591명 → 603명 (증 12명)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1)

1) 본청: 421명 → 428명 (증 7명)

2) 직속기관: 46명 → 49명 (증 3명)

3) 동 : 107명 → 109명 (증 2명)

다.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1)

1) 일반직: 591명 → 603명 (증 12명)

가) 5급: 41명 → 40명 (감 1명)

- 감: 의무(임기제)5급 △1명

나) 6급: 130명 → 133명 (증 3명)

- 증: 행정6급 1명, 사회복지6급 1명, 보건·간호·의료기술6급 1명

다) 7급: 191명 → 193명 (증 2명)

- 증: 행정7급 1명, 세무7급 1명, 행정·사회복지7급 1명, 사회복지·보건·간호7급 1명, 보건·간호·의료기술7급 1명

- 감: 행정7급 △2명, 사회복지7급 △1명

라) 8급: 171명 → 179명 (증 8명)

- 증: 사회복지8급 1명, 간호8급 1명, 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8급 1명, 행정·사회복지8급 1명, 사회복지·간호8급 2명, 행정·시설·방재안전8급 1명, 보건·간호·의료기술8급 2명

- 감: 행정 8급 △1명

3.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4. 근거법규: 【붙임2】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나.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3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기획예산실

2) 팩스번호: 052) 209-3029

3) 전자우편(E-mail): ddiddiya0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기획예산실(전화 (052)209-30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규칙명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1】**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합	계	합 계	605(8)	428(7)	19	49	109(1)
		정무직	1	1			
		일반직	603(8)	426(7)	19	49	109(1)
		별정직	1	1			
정 무 직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03(8)	426(7)	19	49	109(1)
	3급	소 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 계	6	5		1	
		서기관	4	4			
		과학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 계	40	25	2	4	9
		행 정	26	17	2		7
		의 무	2			2	
		시 설	3	3			
		행정·사회복지	4	2			2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시설	1	1			
		환경·보건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6급	소 계	133(1)	99(1)	6	10	18
		행 정	66(1)	50(1)	6	1	9
		세 무	2	2			
		전 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동
		사회복지	6	4			2
일반직	6급	녹 지	1	1			
		보 건	1	1			
		환 경	1	1			
		시 설	13	13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4			7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3	3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의료기술·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방재안전	1	1			
		보건·간호	1			1	
		간호·의료기술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수의·약무·간호	1			1	
		사무 운영	1	1			
		운 전	3	3			
	7급	소 계	193(2)	144(2)	8	18	23
		행 정	81(2)	57(2)	7	1	16
		세 무	13	13			
		전 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동
		사회복지	13	6			7
		사 서	1	1			
일반직	7급	공 업	2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3	3			
		보 건	5	5			
		의료기술	4			4	
		간 호	4			4	
		환 경	2	2			
		시 설	26	26			
		방송통신	5	4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시설	4	4			
		행정·공업	1	1			
		행정·수의	1	1			
		환경·공업	1	1			
		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간호·의료기술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사무운영	0	0			
		기계운영	1	1			
		운 전	6	5		1	
		소 계	179(2)	126(2)	3	14	36
		행 정	64(2)	42(2)		2	20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동
	8급	세 무	7	7			
		전 산	2	2			
		사회복지	19	9			10
		사 서	2	2			
일반직	8급	공 업	3	3			
		녹 지	2	2			
		해양수산	1	1			
		보 건	4	4			
		의료기술	4			4	
		간 호	5	2		3	0
		환 경	2	2			
		시 설	12	12			
		방송통신	2	2			
		방재안전	1	1			
		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9	5			4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시설·방재안전	3	3			
		사회복지·간호	2				2
		간호·의료기술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2			2	
		보건·공업	1			1	
		환경·공업	4	4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과	직 속 기 관	동
		속 기	2		2		
		농림운영	1	1			
		시설관리	1	1			
		운 전	15	13	1	1	
	9급	소 계	51(3)	26(2)		2	23(1)
		행 정	22(3)	15(2)			7(1)
		전 산	1	1			
일반직	9급	사회복지	11	1			10
		시 설	6	6			
		의료기술	2			2	
		행정·방송통신·방재안전	1	1			
		공 업	1	1			
		보 건	1	1			
		행정·사회복지	6				6
별정직	6급 상당	계	1	1			
		소 계	1	1			
		비 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수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							[별표 1]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합계	합 계		593(8)	421(7)	19	46	107(1)	합계	합 계		605(8)	428(7)	19	49	109(1)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		591(8)	419(7)	19	46	107(1)		일반직		603(8)	426(7)	19	49	109(1)
	별정직		1	1					별정직		1	1			
정무직	구청장		1	1				정무직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91(8)	419(7)	19	46	107(1)	일반직	계		603(8)	426(7)	19	49	109(1)
	3급	소 계	1	1					3급	소 계	1	1			
		부이사관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 계	6	5		1			4급		소 계	6	5		1
		서기관	4	4						서기관	4	4			
		과학기술서기관	2	1		1					과학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 계	41	25	2	5	9		5급	소 계		40	25	2	4
		행정	26	17	2		7			행정	26	17	2		7
		의무	3			3					의무	2			2
		시설	3	3						시설		3	3		
		행정·사회복지	4	2			2				행정·사회복지	4	2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시설	1	1		
		환경·보건	1	1						환경·보건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6급	소 계	130(1)	98(1)	5	9	18		6급		소 계	133(1)	99(1)	6	10
		행정	65(1)	50(1)	5	1	9			행정	66(1)	50(1)	6	1	9
		세무	2	2							세무	2	2		
		전산	1	1						전산		1	1		
		사회복지	5	3			2				사회복지	6	4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반직	6급	녹 지	1	1				6급	일반직	녹 지	1	1			
		보 건	1	1						보 건	1	1			
		환 경	1	1						환 경	1	1			
		시 설	13	13						시 설	13	13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6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11	4			7			행정·사회복지	11	4			7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3	3						행정·시설	3	3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의료기술·보건	1			1				행정·의료기술·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보건·간호	1			1				보건·간호	1			1	
		간호·의료기술	2			2				간호·의료기술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수의·약무·간호	1			1				수의·약무·간호	1			1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1	1			
		운 전	3	3						운 전	3	3			
	7급	소 계	191(2)	142(2)	9	17	23		7급	소 계	193(2)	144(2)	8	18	23
		행 정	82(2)	57(2)	8	1	16			행 정	81(2)	57(2)	7	1	16
		세 무	12	12						세 무	13	13			
		전 산	1	1						전 산	1	1			
		사회복지	14	7			7			사회복지	13	6			7
		사 서	1	1						사 서	1	1			
		공 업	2	1		1				공 업	2	1		1	
		녹 지	3	3						녹 지	3	3			
		해양수산	3	3						해양수산	3	3			
		보 건	5	5						보 건	5	5			

현행								개정안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반직	7급	의료기술	4			4		7급	일반직	의료기술	4			4	
		간 호	4			4				간 호	4			4	
		환 경	2	2						환 경	2	2			
		시 설	26	26						시 설	26	26			
		방송통신	5	4	1					방송통신	5	4	1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수의	1	1						행정·수의	1	1			
		환경·공업	1	1						환경·공업	1	1			
		농업·수의	1	1						농업·수의	1	1			
		간호·의료기술	2			2				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4			4				간호·의료기술	2			2	
		사무운영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0	0			
		운 전	6	5		1				기계운영	1	1			
	8급	소 계	171(2)	122(2)	3	12	34	8급	일반직	운 전	6	5		1	
		행 정	65(2)	43(2)		2	20			소 계	179(2)	126(2)	3	14	36
		세 무	7	7						행 정	64(2)	42(2)		2	20
		전 산	2	2						세 무	7	7			
		사회복지	18	8			10			전 산	2	2			
		사 서	2	2						사회복지	19	9			10
		공 업	3	3						사 서	2	2			
		녹 지	2	2						공 업	3	3			
		해양수산	1	1						녹 지	2	2			
		보 건	4	4						해양수산	1	1			
		의료기술	4			4				보 건	4	4			
		간 호	4	1		3	0			의료기술	4			4	
		환 경	2	2						간 호	5	2		3	0
		시 설	12	12						환 경	2	2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반직	8급	방송통신	2	2				일반직	8급	방송통신	2	2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행정·사회복지	8	4			4			행정·세무· 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사회복지	9	5			4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방재안전	2	2						행정·방송통신	1	1			
		시설·방재안전	3	3						행정·시설· 방재안전	3	3			
		간호·의료기술	1			1				시설·방재안전	3	3			
		보건·공업	1			1				사회복지·간호	2				2
		환경·공업	4	4						간호·의료기술	1			1	
		숙 기	2		2					보건·간호· 의료기술	2			2	
		농림운영	1	1						보건·공업	1			1	
		시설관리	1	1						환경·공업	4	4			
		운 전	15	13	1	1				숙 기	2		2		
		소 계	51(3)	26(2)		2	23(1)			농림운영	1	1			
		행 정	22(3)	15(2)			7(1)			시설관리	1	1			
		전 산	1	1						운 전	15	13	1	1	
	9급	사회복지	11	1			10		9급	소 계	51(3)	26(2)		2	23(1)
		시 설	6	6						행 정	22(3)	15(2)			7(1)
		의료기술	2			2				전 산	1	1			
		행정·방송통신· 방재안전	1	1						사회복지	11	1			10
		공 업	1	1						시 설	6	6			
		보 건	1	1						의료기술	2			2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방송통신· 방재안전	1	1			
										공 업	1	1			
										보 건	1	1			
										행정·사회복지	6				6
별정직	6급 상당	계	1	1				별정직	6급 상당	계	1	1			
		소 계	1	1						소 계	1	1			
		비 서	1	1						비 서	1	1			

【붙임 2】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05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민선9기 주력사업(지역경제, 돌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정책 및 현안 사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소속 부서 조정

- 1) 경제정책국에 두는 부서(안 제5조제1항)
 - 노사경제과,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 2) 교육복지국에 두는 부서(안 제6조제1항)
 - 교육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희망돌봄과
- 3) 행정지원국에 두는 부서: 현행과 동일
- 4) 해양환경국에 두는 부서: 현행과 동일
- 5) 안전도시국에 두는 부서: 현행과 동일

나. 과 단위 조정

- 1) 통합·명칭변경: 경제정책과+노사외국인지원과 → 노사경제과
- 2) 신설: 희망돌봄과

다. 팀 단위 조정

1) 이 동

- (소상공인지원팀) 경제정책과 → 노사경제과
- (청년정책팀) 경제정책과 → 노사경제과
- (통합돌봄팀) 노인장애인과 → 희망돌봄과
- (드림스타트팀) 아동가족과 → 희망돌봄과

2) 통합·명칭변경 및 이동

- 노사지원팀 + 외국인주민지원팀 = 노사외국인팀 → 노사경제과
- 조선산업지원팀 + 경제정책팀 일부 사무 = 산업경제팀 → 노사경제과
- 경제정책팀 일부 사무 + 소상공인지원팀 일부 사무 = 시장유통팀 → 노사경제과

3) 분리·명칭변경 및 이동

- 분리·명칭변경: (복지지원팀) 복지정책팀 + 희망복지팀
- 이동: (희망복지팀) 복지지원과 → 희망돌봄과

라. 분장사무 조정

1) 기획예산실: 현행과 동일

2) 경제정책국(안 제5조제2항)

- 가) 노사외국인, 산업경제, 소상공인지원, 시장유통,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나) 관광개발 및 조성, 관광진흥 및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지방세 부과, 징수, 세무조사, 구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국(안 제6조제2항)

- 가) 교육지원, 평생교육, 꽃바위문화관 운영, 친환경급식,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
- 나) 주민서비스 생활지원,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다) 노인행정, 노인시설,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 라) 여성청소년, 보육,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 마) 희망복지 지원, 자살예방, 통합돌봄,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4) 행정지원국: 현행과 동일

5) 해양환경국: 현행과 동일

6) 안전도시국: 현행과 동일

마.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안 제10조제2항)

3.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붙임 2】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3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기획예산실

2) 팩스번호: 052) 209-3029

3) 전자우편(E-mail): ddiddiya0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기획예산실(전화 (052)209-30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를 “노사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사외국인, 산업경제, 소상공인 지원, 시장유통,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광개발 및 조성, 관광진흥 및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 징수, 세무조사, 구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를 “교육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희망돌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서비스 생활지원,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3. 노인행정, 노인시설,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보육,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희망복지 지원, 자살예방, 통합돌봄,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제1항에 따라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를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노사경제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사외국인지원과장”을 “노사경제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노사경제과장”으로 한다.

[별 표]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울산광역시 동구 일원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5길 49(동부동)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2·3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제정책국에 두는 부서) ① 경제정책국에 <u>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u> 를 둔다.	제5조(경제정책국에 두는 부서) ① ----- ----- <u>노사경제과,</u> <u>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u> -----.
② 경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u>경제정책, 사회적경제, 에너지 수급, 청년정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u>	1. <u>노사외국인, 산업경제, 소상공인 지원, 시장유통, 청년정책</u> -----
2. <u>노사지원, 일자리지원,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u>	2. <u>관광개발 및 조성, 관광진흥 및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u> -----
3. <u>관광개발 및 조성, 관광진흥 및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3. <u>지방세 부과, 징수, 세무조사, 구금고 관리</u> -----
4. <u>지방세 부과, 징수, 세무조사, 구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u>	<삭 제>
제6조(교육복지국에 두는 부서) ① 교육복지국에 <u>교육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u> 를 둔다.	제6조(교육복지국에 두는 부서) ① ----- ----- <u>교육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희망돌봄과</u> -----.
② 교육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주민서비스 생활지원, 희망복지 지원,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u>	2. <u>주민서비스 생활지원,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u> ----- -

현행	개정안
3. <u>노인행정, 노인시설, 장애인복지,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u>	3. <u>노인행정, 노인시설, 장애인복지</u> -----
4. <u>여성청소년, 보육, 아동보호, 드림스타트</u> <u>에 관한 사항</u>	4. <u>여성청소년, 보육, 아동보호</u> -- -----
<u><신 설></u>	5. <u>희망복지 지원, 자살예방, 통합돌봄,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u>
제10조(설치) ① (생략)	제1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u>	②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u><신 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u>

신 · 구별표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관할구역</th></tr><tr><td>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td><td>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td><td>울산광역시 동구 일원</td></tr><tr><td><신설></td><td></td><td></td></tr></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울산광역시 동구 일원	<신설>			[별표] 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table><tr><th>명칭</th><th>위치</th><th>관할구역</th></tr><tr><td>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td><td>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td><td>울산광역시 동구 일원</td></tr><tr><td>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td><td>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5길 49(동부동)</td><td>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2·3동</td></tr></table>	명칭	위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울산광역시 동구 일원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5길 49(동부동)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2·3동
명칭	위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울산광역시 동구 일원																	
<신설>																			
명칭	위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울산광역시 동구 일원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5길 49(동부동)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1·2·3동																	

【붙임 2】

참 고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 조례개정 등으로 인한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것으로 동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변 정 임
- 연 락 처: 052)209-3032